

1. 개정이유

법률 명칭 현행화 및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신청자 부담 완화('22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반영)

2.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현행화(안 제2조2제1항제3호 개정)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 명칭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서류제출 부담 경감(안 제3조제1항제3호 삭제)

1) 현재는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법인허가설립증 등을 발급하여 제출해야 함

2) 이러한 제출 서류 중 법인설립허가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서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3) 이를 통해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2. 9. 23.~11.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제1호”를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제3호”를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2. (생략) 3.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기술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 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융 회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사업 4. (생략) ② (생략)	제2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① ----- ----- ----- -----. 1.·2. (현행과 같음) 3. -----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 호----- ----- ----- ----- --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제3호----- -----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 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 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 ----- ----- ----- ----- ----- -----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기술단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u>법인설립허가증</u> 4. ~ 6. (생략) ② (생략)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u><삭제></u>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